

## 外務高試制度的 改善方案

朴 相 燮\*

### I. 序

近代的 主權獨立國家로서 출범한 이후 40년이 지난 우리나라의 外交는 다른 모든 분야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飛躍의 契機를 맞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의 國力이 비상하게 발전한 데 따른 자연스러운 일로 여겨진다. 이러한 새로운 발전과 도약의 계기는 그에 따른 強化된 外交를 새로이 요청하는 것이지 그 계기 자체가 자동적 외교역량 강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즉 새로운 계기를 맞아 그에 합당한 또 다른 새로운 努力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바 이 점을 外交業務 수행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때 그 수행의 일선담당자인 外交官의 精銳化라는 문제가 일차적으로 떠오른다. (1)

과거 한국 외교는 한국의 국제정치적 위치를 그대로 반영하여 전개되었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 交涉相對國은 美國과 日本에 국한되었고 그 관계의 주요 내용은 安全保障 및 經濟援助 등에 초점이 주어졌다. 이러한 까닭에 外交는 자연히 수동적, 소극적인 양태를 띠 수 밖에 없었다. 美日을 제외한 나라들과의 관계는 특별한 실질적 내용을 가졌다기보다는 儀禮의인테 머물렀고 그나마도 北韓과의 外交競爭때문에 촉진된 경우가 잦았다.

그러나 그동안의 國力伸張의 결과로 한국의 國際的 地位는 급속히 상승되었고 따라서 外交關係는 대상이나 내용면에서 확대되었다. 즉 대상에 있어서는 美·日을 넘어서 多邊化되었고 관계의 내용도 安保를 넘어서 多樣化되었다. 우선 전통적 우방인 美國과 日本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수동성, 소극성을 극복하면서 동시에 보다 深化된 관계로 발전함으로써 새로운 관계모색의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通商關係, 이에 따른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協力關係 수립 필요성 증가, 社會主義 國家들과의 새로운 修交 등에 따라 한국 외교는 새로운 挑戰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과제들을 부여받고 있는 상황에서 外交力量의 強化를 위한 外交官의 精銳化는 대단히 구체적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外交官의 정예화 문제는 여러 단계에서 논의될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資質있는 豫備外交官의 선발이 제 1 차적

\* 서울大學校 外交學科 副教授

(1) 이 「外交官의 精銳化」의 필요성에 관한 문제의식은 다음 글에서 잘 나타난다. 윤석현, 외교관의 정예화, 外交 3호 pp. 4-7.

으로 다루어져야 할 문제라고 여겨진다.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外務公務員의 선발 제도, 즉 外務高試制度를 다루고자 한다.

## II. 現行 外務高試制度의 反省과 改善策의 摸索

### 1. 受験資格의 문제

#### 가. 年齡制限

현재 5급직 外務公務員의 公採에 관한 연령제한은 他行政職의 규정인 20세 이상 35세 미만과는 별도로 상한 연령이 32세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연령제한은 外務職 업무의 특수성을 별도로 고려한 결과로 이해된다. 즉 日常生活에서 「국제관계」가 자주 경험되지 않는 까닭에 국제문제와 外國에 관한 지식은 外務公務員 任用後 장기간의 수련과정을 통해서 얻어지게 된다. 또한 업무수행에 필수적인 외국어의 습득도 상당기간의 훈련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임용후부터 실제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시기까지는 일정기간이 소요된다. 이러한 까닭으로 5급직 外務공무원의 공채 연령 상한은 타부처의 경우에 비해 낮아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점이 고려되어 32세로 규정되었는데 과연 32세의 상한이 현실성이 있는지 또는 약간 더 낮추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더 토론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sup>(2)</sup>

#### 나. 學歷制限

그 직업상의 특수성으로 인해 外交官은 자신의 전문분야에 관한 해박한 지식을 소유하는 외에도 국제적 교섭 즉 對人接觸에 필요한 필수적인 폭넓은 教養을 갖출 것이 요청된다. 이러한 폭넓은 교양은 전문지식과 달리 단기간의 주입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교육을 전제로 이루어진다. 현대사회의 특성상 그러한 교육은 불가피하게 各級學校를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外무고시 응시자격에 일정한 학력제한을 두는 것이 당연시 될 수 있다.

그러나 現在 社會 전체의 압도적 분위기가 身分上의 平等主義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 임용자격에 學歷制限을 규정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처럼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의 公務員 任用 및 試驗 施行規則에서는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여 公務員 公開採用試驗에서는 학력제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그 나름대로 이해될 수 있는 일이지만 기본자격 요건에 관한 사항도 무시할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이러한 두가지 요청 사항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일이 중요하게 부각된다.

현재 주어진 조건 하에서는 시험과목의 조정을 통해서만 그러한 요청사항이 충족될 수

(2) 예를 들어 日本의 경우 外務公務員 I 種試驗의 연령상한은 시험일자 기준으로 滿 28세 미만으로 되어 있다. 우리의 경우는 軍服務를 고려하여 上向조정될 수 있을 것이다. 여하튼 32세는 너무 높게 책정된 것으로 보인다.

있으므로 시험과목을 그것에 맞게 재조정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시험과목이 단순히 專門知識의 소유여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一般的 敎養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다. 應試回數의 문제

수험자가 응시에 필요한 다른 조건을 갖추어도 불구하고 다만 과거의 낙방경력만을 문제로 응시자격을 박탈당한다면 별로 설득력있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응시회수에 관한 규정은 따로 설치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다만 앞에서 이미 논의된 年齡制限에 관한 규정의 적용으로 유사한 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

2. 試驗科目의 문제

가. 現行制度的 골격

外交官의 선발을 위한 시험제도는 行政高試와는 별도로 外務高試를 설치하여 5급직 外務公務員을 定例的으로 선발하기 시작한 1968년 이래, 약간의 수정을 무시한다면, 큰 변동없이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1차 客觀式 고사에는 憲法(1976~1980년까지 2차 고사과목이었음), 政治學, 英語, 國史(1972년에는 2차 필수과목이었음) 및 文化史(1981년에 추가)가 포함되어 있다.

2차 論述式 고사는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되어 있다. 전자에는 國際法, 經濟學(1976~1980까지는 1차 과목이었고 1980년도 개정시 다시 2차과목이 되면서 국제경제학을 포함함), 外交史(1981년 개정때 國際政治學으로 바뀌면서 外交史는 그 일부가 됨), 英語가 포함되는데 1981년 11월 大統領令(公務員任用試驗令)의 개정을 통해 國民倫理學이 이에 추가되었다.

선택과목에는 行政學, 行政法(1973년부터), 國際私法, 國際經濟學(1980년까지), 民法總則, 社會學(1981년 추가), 財政學(1981년 추가), 第二外國語(1980년 폐지) 등이 있고 1990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情報體系論이 추가될 예정이다. 현행 시험과목은 아래의 표와 같다.

1차(5과목)	2차	
	필수 (6과목)	선택 (1과목)
憲法, 文化史, 政治學, 英語, 韓國史	英語, 國際法, 經濟學(國際經濟學 포함), 國際政治學(外交史 포함), 國民倫理, 第二外國語(獨語, 佛語, 스페인語, 中國語, 露語, 馬印語, 아랍어, 日語中 1)	國際私法, 民法總則, 行政法, 行政學, 社會學, 財政學, 情報體系論(1990.1.1 이후 포함) 중 1과목

한편 3차시험은 個別面接과 集團討論으로 구성되는 人物考查로 여기에서는 2차시험까지 선발된 26명에서 6명이 탈락된 20명이 최종합격자로 선발된다.

나. 試驗科目의 전체적 평가: 資質 및 品性評價의 문제

위에서 소개된 (筆記)試驗科目의 適切性與否를 평가하기에 앞서 우리는 우선 豫備外交官

선발의 현행방식 그 자체를 전체적으로 평가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왜냐하면 현행의 제도는 應試者들이 外交官으로서 필요한 最小限의 專門知識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만 묻는 것으로 그치기 때문이다. 즉 여기에서 우선적으로 제기하고자 하는 문제는 과연 專門知識에만 局限된 筆記試驗이 현재 시급히 요청되는 精銳화된 外交官 선발에 충분한가 하는 점이다.

현행제도에서 압도적 비중을 갖고 있는 專門科目에 대한 필기시험만으로써는 外交官志望者들의 기본 성품과 자질의 측면이 전혀 측정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제도가 고집되는 이유는 그러한 品성과 資質의 측면에 대한 測定이 客觀化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어렵다는 것과 불가능한 것은 전혀 다르고 더우기 그 측정의 필요성이 절실히 느껴지기 때문에 그 어려움은 여하한 방식으로든지 극복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실제 品性の 측정이 어렵기는 하나 그 중요성이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오랜 外交經驗을 갖고 있는 歐美諸國이나 日本에서는 각자 나름대로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 측정기준 또는 평가방식을 마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많은 경우 우리 행정제도의 源流가 되고 있다고 여겨지는 日本의 外務公務員(I種=上級系員)의 선발규정을 보면 시험과목은 우리와 유사하나 다음과 같은 두가지 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우리의 제도에서의 I차시험에 해당하는 것은 擇一式(객관식) 一般教養試驗 한 과목으로 국한되는 것이 그 하나이다. 다음 筆記試驗 合格者에 한하여 이미 치뤄진 시험과목중 憲法, 國際法 및 經濟原論에 한해 口述試驗을 치르고 동시에 筆記로 「總合試驗」을 부과한다. 이 總合試驗은 「外務公務員으로서의 職務遂行에 必要한 學識, 應用能力, 判斷力 및 理解力을」 측정하는 것이라고 시험요강에 밝혀져 있는데 이것은 바로 기본자질에 관한 측정을 위한 것으로 여겨진다.

歐美의 경우, 외교관 선발에서는 應試者의 知能(intelligence)의 측면과 性品(personality)의 두가지 측면이 동시에 고려되고 있다. 물론 지능이나 性品の 평가를 위한 細部基準은 각국마다 다르다. 이 기준들은 대체로 數百年間의 外交傳統 속에서 개발되고 확립된 外交官像과 관련되어 마련된 것으로 여겨진다.<sup>(3)</sup> 이러한 구체적 기준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sup>(4)</sup>

(3) 西歐에 있어서 外交官의 資質 또는 德目에 관한 논의의 전통은 상당히 뿌리 깊다. 이러한 논의는 西歐 外交制度의 확립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예컨대 18세기 프랑스 외교관이었던 François de Callières의 交渉方式論이나 20세기 英國의 Nicolson의 外交論 등이 대표적 예로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Harold Nicolson, *The Evolution of Diplomatic Method* (London: Constable, 1954); H. Nicolson, *Diplomacy*, 3rd ed. (London: Oxford Univ. Press, 1964) 참조. 국내의 연구서로는 金洪喆, *外交制度史*(民音社, 1985); 林尙植, *外交官, 外交* 4, pp. 86-91 참조.

(4) 이 표는 趙昌鉉, *外交官의 選拔과 研修에 관한 小考—歐美 4大國을 中心으로*(外交安保研究院, 1981)에 근거함.

國 家	知能(intelligence)의 기준	性品(personality)의 기준
美 國	① 英語表現能力 ② 一般常識(General Background) ③ 機能의 試驗(Functional Field Test) 一行政, 領事, 經濟, 商業, 政治 등 에 대한 지식	① 創意性(creativity) ② 人間關係(interpersonal characteristics) ③ 순발력(versatility) ④ 判斷力(judgment) ⑤ 外貌(physical appearance) ⑥ 말씨(diction) ⑦ 性格의 特徵(personality character)
英 國	① 圓단한 思考力(all-round mental ability) ② 分析力(analytical skills) ③ 感受性(sensitivity) ④ 想像力(imagination) ⑤ 知的 好奇心(intellectual curiosity) ⑥ 知的 正直性(intellectual honesty)	① 感受性 ② 想像力 ③ 獨立性(independence) ④ 自主性(self-reliance) ⑤ 適應力(adaptability)
프 랑 스	① 一般敎養(정치, 경제, 사회사상 등) ② 行政法, 重要外國의 政治制度에 관 한 知識 ③ 經濟政策 ④ 外國語	① 判斷力 ② 個 性 ③ 好人像
西 獨	① 法律 ② 近代史, 政治學 ③ 經濟學 ④ 一般文化, 社會常識	① 一般性品 ② 品行(demeanor) ③ 容貌 ④ 動機(motive)

물론 우리나라에서, 보다 구체적으로는 外務公務員이 소속되어 있는 外務部가 필요로 하는 資質에 관한 細部基準를 별도로 마련하여야 할 것이나 일단 정해진 기준에 맞는 筆記 또는 口述試驗方式을 따로 만드는 것은 시험 주관부처의 소관사항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品性, 資質과 같이 주관적으로 흐르기 쉬운 평가라도 일단 필기시험으로 바꿀 수 있다면 그 평가는 상당히 客觀化될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그 결과에 대한 是非는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한 구체적 예로 英國의 外交官 선발에서 부과되는 Appreciation 시험을 들 수 있다. 이 시험에서는 「매우 복잡하지만 현실적으로 있음직한 문제에 대해 政治, 經濟, 社會의 觀點에서 受驗者가 獨自的인 分析, 評價 및 對策을 제시하게」<sup>(5)</sup> 되어 있는데 이것을 통해 최소한의 資質評價는 가능할 수 있으리라고 여겨진다. 또 한편 西獨의 경우처럼 먼저 書類 심사를 통과한 응시자들을 면접하여 여기에서 성품, 용모, 품행, 동기 등을 평가하여 먼저 品性과 資質을 판단한 다음 이들에게만 다음 단계의 筆記試驗을 치르게 하는 방법도 援用할 수 있을 것이다.<sup>(6)</sup>

(5) 崔炳九, 外務高試의 改善을 위한 小考, 外交 4, p.85.

(6) 上同, p.84.

여하한 방법을 취하든간에 제일 큰 말성의 소재가 되는 採點의 客觀性 문제는 努力과 費用만 아끼지 않으면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채점 방식의 문제는 아래의 5의 다項 참조).

다. 高試科目의 조정

基本資質과 品性의 측면 외에도 專門知識을 측정하는 시험과목의 선정에 있어서도 外交官의 精銳化라는 대전제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앞에서의 논의는 전문지식의 측정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전문지식만이 외교관 선발에 거의 유일한 기준이 되고 있는 점이 문제성을 안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었다. 일단 이러한 점을 인정할 때에도 전문 지식 측정을 위한 과목선정 문제는 여전히 중요한 것으로 남는다.

<外國語>

外交官으로서 갖추어야 할 전문지식에는 여러가지가 포함될 수 있으나 우선 지적되어야 할 사항은 外國語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현행 2차고사에서 英語를 포함하여 2개의 외국어를 필수로 하는 것은 타당한 일로 여겨진다. 英語가 선택의 여지없이 필수과목으로 부과되고 있는 사실은 영어가 세계정치 속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고려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차시험에도 영어 과목이 설치되어 있다는 점은 중복이라는 인상을 준다. 따라서 중복을 피하는 일은 충분히 고려될 수 있다.

응시자가 1과목을 선정하게 되어 있는 제 2외국어의 목록에는 獨語, 佛語, 스페인語, 中國語, 露語, 馬印語, 아랍어, 日本語가 포함되어 있다. 지난 20년간의 추세를 볼 때 그때 그때의 상황변화에 따라 特殊地域語가 점차로 추가되는 경향이 드러난다. 이러한 경향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再論의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세계정치 속에서의 어떤 특수지역의 중요성이 증가되면서 그 지역의 언어가 시험과목으로 등장되는 것보다는 어떤 일반원칙을 설정해 놓고 과목의 범위를 축소·고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진다. 예컨대 UN公用語같은 것이 시험과목 기준으로 채택될 수 있을 것이다.

나머지의 특수지역 언어들은 特化하여 전담 전문인을 양성 또는 채용하는 방법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특수외국어의 인력은 해당지역에 파견 장기 연수케 할 수도 있고 또는 特探 또는 別定職任用을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國際關係 분야>

專門知識의 분야중 외국어를 제외하고서 일차적 중요성을 갖는 분야가 국제관계의 분야이다. 현행제도에서는 국제법과 국제정치학(외교사 포함)이 이 부문을 대표한다. 이 과목들의 중요성은 오늘날의 국제관계의 내용이 복잡해지면서 더욱 커져가고 있다. 이러한 최근의 추세를 감안할 때 國際政治學의 現行比重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이유가 충분히 있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外交史를 국제정치학의 일부로 두기 보다는 각자를 국제법과 동일한 비중으로 취급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지 않는가 여겨진다.

한편今日の 국제관계의 내용에서 경제관계의 중요성이 자꾸 커져가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경제학의 일부로서 취급되는 국제경제학을 별도의 과목으로서, 최소한 선택과목의 일부로라도, 취급하는 일 또한 다시 한번 고려해볼 일이라 여겨진다.

#### <國民倫理>

1981년도부터 2차고사의 필수과목으로 부과되고 있는 國民倫理는 아직까지 독자적 학문으로서의 성격(연구대상, 범위, 방법)이 불분명하다고 지적된다. 이 과목은 전문지식을 묻는 것이기 보다는 자질을 알아보는 과목의 성격이 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화된 지식으로서 시험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응시자들의 전문지식 측정에도 큰 도움이 안되고 동시에 資質 또는 品性 측정에도 큰 도움이 안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2차고사의 필수과목으로서 國民倫理가 합당한지에 대해서는 관련인사들 사이에 보다 심각하고 진지한 토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필자로서는 앞에서 제기한 資質 및 品性測定을 위한 筆記試驗의 일부로서 국민윤리가 원용될 수 있으리라고 여겨진다.

#### <1次考查의 문제>

현행 1次考查는 상당히 많은 수의 응시자들을 일단 추림으로써 2次考查의 운영을 훨씬 쉽게 하려는데 그 기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말하자면 바람직한 外交官의 선발 그 자체에는 큰 도움이 안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1次考查는 試驗管理의 容易性보다는 보다 有用하고 資質있는 응시자의 선발이라는 원래 목적에 봉사할 수 있도록 시험의 성격이 바뀌어야 할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는 시험과목이 暗記만 잘하면 누구나 합격할 수 있는 객관식 시험보다는 資質과 品性を 측정할 수 있는 방식의 시험제도로 바뀌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 <人物考查>

현재 시행중인 3차고사 즉 인물고사가 원래의 취지, 즉 전문지식 측정으로 할 수 없는 人性的 側面의 검사라는 목적에 잘 봉사하는지에 대해서는 새로운 토론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비교적 높은 경쟁에서 이기고 두차례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을 인물고사에서 낙방시키게 한다는 사실 자체가 지극히 문제성 있기 때문에 현재는 대체로 필기시험 성적순이 거의 例外없이 최종합격자 판정의 기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人物考查는 어쩌면 有名無實한 과정일 수가 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앞에서 논의한 品性檢査의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이러한 人物考查의 有名無實化를 막을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 3. 選拔人員의 문제

선발인원의 문제는, 外務高試가 기본적으로 任用試驗이기 때문에 資格試驗으로서의 司法試驗과 같은 맥락에서 논의될 수 없을 것이다. 즉 外務部의 人力需給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점은 外務部當局과 긴밀한 협조하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 4. 試驗施行機關의 문제

外務高試의 경우 반드시 外務部가 주관해야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行政高試의 경우와 달리 選拔된 外務公務員이 소속될 부처는 外務部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또한 業務의 성격이 특수하기 때문에 반드시 外務部와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바탕으로 시험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總務處의 경우 公務員 一般으로서의 자격을 강조할 가능성이 있고 外務部로서는 外交官으로서의 자격이 강조될 가능성이 높음으로써 관계부처 사이에 대립적 의견이 제시될 수 있다. 여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두가지 요건이 동시에 충족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 5. 試驗의 方法

#### 가. 試驗委員의 選定

시험위원의 선정은 試驗의 客觀性維持와 직접적 관련을 갖는 것이므로 대단히 중요한 일로 여겨진다. 지금까지의 고사가 專門知識 測定에 국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관계 學者들이 참여하였지만 만일에 앞에서 언급된 品性檢査가 어떠한 형태로든지 채택된다면 문제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專門知識에 국한해서 볼 때 시험위원의 선정은 현재는 시험관리기관인 總務處의 담당관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담당관 자신은 가능한 한 客觀的 態度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겠으나 담당관이 관련 학계의 전반적 사정을 충분히 熟知한다는 보장은 없다.

이러한 점에서 시험위원의 선정작업은 관련 학계를 대표하는 학술단체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예컨대 國際政治學의 경우 韓國國際政治學會, 國際法の 경우 國際法學會 같은 公認된 기관과의 협조가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品性 및 基本資質檢査에 관해서는 아직 구체적 시험방법조차 결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연구할 특별위원회가 총무처 및 外務部의 공동 주관하에 설치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試驗委員의 公開問題에 있어서 시험의 공정성을 위해 事前公開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事後公開은 시험위원들의 責任意識을 높인다는 점에서 적극 권장할 필요가 있다.

#### 나. 試驗問題의 選定方法

試驗制度의 根本的 革新이라는 관점에서 시험과목뿐 아니라 시험문제까지도 관련 학술기관과 협조하여 전면적 개편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진다.

#### 다. 採點方法

選擇型 문제들의 경우는 객관성이 상당히 보장되나 專門知識에 관한 것이거나 品性檢査에 관한 것이거나 관계없이 採點에는 항상 客觀性是非가 따르게 마련이다. 이 객관성을 보장하는 最善의 方策이 따로 있을 수 없으나 우리는 그것에 보다 가까이 接近하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다.



우선 보다 많은 사람이 채점에 참여한다. 그리고 채점자 개인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最高點은 고려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를 택하여 평균을 내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되기 위해 참가해야 하는 최소한의 채점자의 數는 5인이 된다. 費用과 時間을 고려안 하면 더욱 늘릴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점은 시험관리부처의 행정적인 고려에 의해 조절될 수 있을 것이다.

#### 라. 試驗의 事後評價

制度的 점진적이고 지속적 改善을 위해 시험의 事後評價는 항상 필요하다. 이것을 위해서 시험문제 출제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관계자들, 예컨대 專門學者, 外務部 및 總務處의 관계자들로 구성된 常設機構의 설치가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진다.

### 6. 研修過程의 문제

#### 가. 研修機關

현재 5級 外務高試에 합격한 사람들은 外交安保研究院의 주관하에 연수를 받고 있다. 이 점은 큰 문제점을 드러내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外交安保研究院은 단지 행정적으로만 이 연수과정을 처리하고 있을 뿐 자체의 연구업무와 유기적 연관을 맺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굳이 外交安保研究院이 담당해야 할 행정절차상 외의 이유는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담당기관의 논의보다는 研修過程 전반(교과목, 기간, 목적)에 관해 기본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나. 研修期間

현재의 研修는 4個月간에 걸쳐 語學, 一般教養 및 國際情勢 등에 걸쳐 교육을 받고 있다. 어학을 제외한 다른 과목들의 강좌가 外務業務實際와 有機的 關聯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外交業務遂行에 필요한 기초지식 및 일반교양에 관한 연수는 가능한 한 짧게(예컨대 1個月) 하고 外務部 各 部署에서의 見習過程을 길게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語學의 경우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따라서 語學訓練과 現場實習을 併行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語學과 部內業務 實習을 마친 사람들에게는 海外公館業務의 實習과 아울러 海外教育機關에서의 長期研修를 받을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